

## 4 재정운용계획

### 4-1.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광산구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5	146,198
여성정책추진사업	32	81,39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1	64,55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246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99,802	764.6	모델안 2~3준용

-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반영된 참여예산은 765백만원으로 전년 483백만원보다 28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b>총 액</b>			<b>764.6</b>	
1	생명농업과	신창동 매결마을 농로보수	15	신창동
2		임곡 연동 경로당 앞 배수로 설치	15	임곡동
3		임곡 내기 수로정비	10	임곡동
4		임곡 오룡동 입구 철길도로 침수개선	25	임곡동
5		삼도 신광마을 용배수로 개거 설치	25	삼도동
6		본량 삼거리 버스승강장 옆 배수로 보개사업	5	본량동
7		미나리 홍보탑 설치	15	동곡동
8	공원녹지과	송정공원(말미산)운동기구 설치사업	30	신흥동
9		무양공원 시설물 정비보강 사업	30	첨단2동
10		월곡공원 운동기구 바닥면 정비	10	월곡1동
11		신가공원 계단정비 및 화단조성	30	신가동
12		우산제5호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18	우산동
13		하남제2호 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	12	월곡2동
14		비아제5호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8	비아동
15		신가어린이공원 제1호 놀이시설물 정비	20	신가동
16		임곡동 가로화단 조성	10	임곡동
17		완충녹지 수목 식재	10	첨단1동
18	건설과	반사경 설치 및 위치 변경	1.3	송정1동
19		라인2차 아파트 출입구 과속방지턱 및 반사경 설치	3	송정2동
20		(구)유성사거리 과속방지턱 설치	4	송정2동
21		도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10	도산동
22		횡단보도 보행로 설치	30	도산동
23		금호아파트 인도 포장(연차사업)	30	월곡1동
24		일신아파트 주변 교통환경 개선	0.5	월곡2동
25		하남제2호 어린이공원 인근 주택가 보도블럭 정비	40	월곡2동
26		진흥중학교 주변 가드레일 설치	5	신창동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27		구촌반촌길 도로 반사경 설치	1	신창동
28		송촌마을 안길 포장	20	평동
29		침산마을안길 도로 포장	15	동곡동
30		어룡초, 정광중·고 통학로 확장사업	30	어룡동
31		양촌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40	삼도동
32		오운로 가로등 설치	20	삼도동
33		신가부영 후문 보행등 설치	1	신창동
34	교통지도과	하나중학교 앞 안전휀스 설치	25	수완동
35		송정동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설치	40	신흥동
36		수완아이(eye)프로젝트 밝은 안심 정류장 조성	7.5	수완동
37		신용동 유개승강장 설치	4	평동
38		어룡동 유개승강장 설치	4	어룡동
39		비아 동원촌 유개승강장 설치	12	첨단1동
40	청소행정과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CCTV설치	18	월곡1동 월곡2동 비아동
41	주민자치과	아파트공동체 문화 조성	6.3	운남동
42	송정1동	공항산책로 일대 쉼터 조성	15	송정1동
43	송정2동	송정동 맛집 안내판 설치	10	송정2동
44	운남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지원	14	운남동
45		엘로카펫 추가설치	20	운남동
46		물품 공유 확산 인프라시설 확대설치	20	운남동
47	임곡동	임곡 꿈쟁이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10	임곡동
48	첨단1동	첨단둘레길 재정비사업	20	첨단1동

### 4-3.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광산구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96	195	178	491,764	457,021	34,743
기획관리실	1	2	4	6	6,183	7,518	-1,335
혁신정책관	1	4	4	4	552	528	24
공보관	1	1	1	1	774	615	159
감사관	1	1	1	2	104	86	18
복지문화국	1	27	56	44	313,389	290,202	23,187
경제환경국	1	16	33	29	48,192	41,229	6,963
안전도시국	1	12	27	32	21,844	19,971	1,874
자치행정국	1	18	35	33	83,435	79,416	4,019
보건소	1	14	32	25	13,905	14,069	-164
의회사무국	1	1	2	2	1,199	1,100	99
동주민센터	0	0	0	0	2,187	2,287	-10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1.44	32.17	62.45	11.68	72.35	63.6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8	58	-
	부단체장	41	41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90	270	-2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85	85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63	63	-
	의원국외여비	32	38	6
지방보조금		4,842	1,467	-3,37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292	1,790	-502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인당 1,492천원	1인당 1,479천원	-13천원
공무원 일·숙직비		1일/야당 50천원	1일/야당 50천원	-

- ▶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lofin.mo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의회 관련경비 중 의원국외여비는 편성기준 예외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국외교류·협력 차원 추진되는 교류행사 참석등을 위해 6백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2,292백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야하나 통장 기본 수당 502백만원이 본예산에 미반영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 지방보조금 기준액=전년도 총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 증감율)

#### 4-6.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5년에 우리 광산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 해당없음 -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4-7.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5년에 우리 광산구의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 해당없음 -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